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허정행 의원)

의안 번호	16-122
----------	--------

발의년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허정행 · 강희향 · 백남환  
신종갑 · 유호렬 · 이동주  
이필례 · 이학래 (8명)

## 1. 제안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마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포구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구분함(안 제4조)
- 다.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기부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 라.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함 (안 제6조)
- 마.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

###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11. 25. ~ 2016. 11. 30.(의견제출 없음)

다. 조례안 :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 기술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

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 538호(2003. 5. 6..제정)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